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(우재준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6860

발의연월일: 2024. 12. 23.

발 의 자: 우재준 • 서천호 • 이성권

김승수 · 김소희 · 박충권

김위상 • 인요한 • 진종오

이준석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제4장 "자동차·선박 등의 배출가스 규제" 내에 무공해자동 차의 보급과 무공해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·운영에 대해서 규율하고 있음.

한편, 정부는 2050년 탄소중립 등을 발표하면서 2025년까지 전기자 동차 113만대, 수소자동차 20만대를 보급하는 등 과감한 정책목표를 설정하고 있어 이를 이행하기 위해 법적 기반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는 지적이 있음.

또한, 최근 무공해자동차의 화재 사고로 인한 물적 피해가 발생하는 바 충전시설 설치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환경부에서 점검 등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문화할 필요성이 지적되었음.

이에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무공해자동차 연료공급시설 관련 정보를 관리하는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도록 하고, 전기자동차

충전시설에 대한 정기검사 및 이에 따른 개선명령의 근거를 마련하여 무공해자동차 연료공급시설 관련 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임(안 제58조의 10 및 제58조의11 신설 등).

법률 제 호

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대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8조의10부터 제58조의12까지를 각각 제58조의12부터 제58조의14까지로 하고, 제58조의10 및 제58조의11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58조의10(무공해자동차 연료공급시설 통합관리시스템 구축) ① 환경 부장관은 무공해자동차에 연료를 공급하기 위한 시설에 관한 정보 를 관리하기 위하여 전산망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 ·운영해야 한다.

-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산망의 설치·운영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.
- 1.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
- 2.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
- 3. 「전기사업법」 제7조의2에 따른 전기신사업자 중 전기자동차충 전사업자(이하 "전기자동차 충전사업자"라 한다)
- 4. 「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50조에 따른 수소판매사업자
- 5. 그 밖에 전산망의 설치 · 운영을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

정하는 기관

- 제58조의11(충전시설의 정기검사) ① 전기자동차 충전사업자는 전기자 동차 충전시설의 운영·관리 등의 점검을 위해 환경부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매월 1회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.
 -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가 부적합한 경우에 환경부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자동차 충전사업자에게 개선을 명할 수 있다.
 - ③ 제2항에 따라 개선명령을 받은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내에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 </u>	제58조의10(무공해자동차 연료공
	급시설 통합관리시스템 구축)
	① 환경부장관은 무공해자동차
	에 연료를 공급하기 위한 시설
	에 관한 정보를 관리하기 위하
	여 전산망을 환경부령으로 정
	하는 바에 따라 설치 · 운영해
	<u>야 한다.</u>
	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
	전산망의 설치・운영에 필요한
	자료의 제공을 다음 각 호의
	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
	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
	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
	에 따라야 한다.
	1.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
	2.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
	법률」 제4조에 따른 공공기
	관
	3. 「전기사업법」 제7조의2에
	따른 전기신사업자 중 전기자
	동차충전사업자(이하 "전기자
	동차 충전사업자"라 한다)

<신 설>

<u>제58조의10</u> ~ <u>제58조의12</u> (생략)

4. 「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50조에 따른 수소판매사업자

5. 그 밖에 전산망의 설치·운 영을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필 요하다고 정하는 기관

① 전기자동차 충전사업자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운영· 관리 등의 점검을 위해 환경부

제58조의11(충전시설의 정기검사)

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월 1회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.

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가 부적합한 경우에 환경부렁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전기자동차 충전사업자에게 개선을 명할 수 있다.

③ 제2항에 따라 개선명령을 받은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 는 기간 이내에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.

제58조의12 ~ 제58조의14 (현행 제58조의10부터 제58조의12까 지와 같음)